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4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김경 의원(찬성 25명)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전문가에 따르면 영유아는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고 감정에 공감하며 이를 기반으로 언어·지적 능력과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돌봄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와 영유아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해 영유아의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 감소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맞아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물품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1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맞아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재난상황에 필요한 물품비용 지원(안 제22조제1항제12호)

- 동 개정안은 안 제22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			-----	
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p><신 설></p> <p>12. (생 략) ②·③ (생 략)</p>	<p>12. <u>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 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 품구입비용</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¹⁾는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방역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²⁾ 및 동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³⁾는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동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보육 등에 필요한

-
- 1)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이하 생략-
 - 3)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이하 생략-

물품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언어발달 향상이 기대된다 할 것임.

- ‘투명마스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대응 보육물품 지원 근거로써 기능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하겠음.

□ 영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

- 영유아들은 부모나 교사의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74.9%가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언어 노출과 발달기회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⁴⁾
- 현재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 서울시 4개 자치구(종로구, 성동구, 도봉구, 중구)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투명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 2매씩을 배부하여 영아의 언어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음⁶⁾.

4)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5) 이원욱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 2112654, 제안일 : 2021.09.24. 상정일 : 2021.11.11.).

6) 서울시 보도자료(2021.12.2.),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성장

※ 투명마스크 구입단가는 개당 8천원⁷⁾으로 국비, 시비 지원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투명마스크는 필터가 없어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떨어져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해 그 필요성 및 내용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기 영아 언어발달 지원.

7)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2021년 종로구 성인용 소통마스크 구입단가 개당 8천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제리, 김태수,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전문가에 따르면 영유아는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고 감정에 공감하며 이를 기반으로 언어·지적 능력과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돌봄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와 영유아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해 영유아의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 감소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맞아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물품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1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11. (생 략)</p> <p><u><신 설></u></p> <p>12.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u> <u>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u> <u>구입비용</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100800000032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김경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08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물품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보육교직원 보육물품비용 = $\sum_{i=1}^5$ (연간보육교직원보육물품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 비용 ≙ 353,808천원
= 8천원 × 22,113명 × 2개

※2021년 종로구 성인용 소통마스크 구입단가 개당 8천원

나. 재원아동 보육물품비용 = $\sum_{i=1}^5$ (연간재원아동보육물품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 비용 ≙ 597,366천원
= 3,500원 × 85,338명 × 2개

※2021년 종로구 아동용 소통마스크 구입단가 개당 3,500원

참고)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기준년월 : 2021.9.30.(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단위:개소수, 명)

어린이집유형	어린이집수	보육교직원수	아동정원수	아동현원수
합계	5,079	51,358	236,605	181,236
국공립	1,799	22,113	103,399	85,338
사회복지법인	23	260	1,682	1,185
법인·단체등	92	927	5,435	3,907
민간	1,181	13,290	74,219	53,829
가정	1,662	9,720	30,420	22,919
협동	28	245	859	645
직장	294	4,803	20,591	13,413